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2.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1월 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본 출연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사업내용	- 장학사업 추진 - 교육지원 사업
출연금의 범위	- 기본재산 적립 및 운영비 - 인재육성 장학금 -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사업 -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 사업 - 해외 연계 체험형 교육 사업 등
출연금액	1,698,148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2024년 1월 정식 출범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년간 ▲맞춤형 장학사업 ▲해외 선진 항공우주캠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1,154,027천원이고,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1,698,148천원으로 2024년보다 544,121천원이 증가함. 이는, 교육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짐.
- 한편,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 442 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본 출연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나. 법적근거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다. 사업내용

- 1) 장학사업 추진: 우수 인재 발굴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 2)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체험 교육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라. 출연 필요성

- 1) 재원 확대의 필요성: 미래교육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기부금에 의존해왔으나, 현재의 재원으로는 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가 어려움. 구 출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 2)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학 지원이 절실함. 출연금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해외 체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가. 범 위

- 1) 기본재산 적립 및 운영비
- 2) 인재육성 장학금
- 3)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사업
- 4)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 사업
- 5) 해외 연계 체험형 교육 사업 등

나. 출연금액: 1,698,148천원

※ 출연금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